

국내 M&A 활성화를 위한 방안

- 세무 및 회계적 요구사항 (2) -

지난 주에 이어 국내 M&A 활성화를 위해 꼭 개선되어야 할 세무 및 회계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.

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폐지해야 한다.

지방세법 제105조(납세의무자 등)에 의하면 인수자가 비상장법인인 주식 50% 초과 인수시 인수자가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, 건물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부동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M&A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문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.

의제배당을 비과세해야 한다.

소득세법 제17조(배당소득)에 의하면 코스닥 등록기업과 합병하는 대주주의 경우 2년간 주식이 보호예수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합병직 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이에 대한 비과세가 논의되어야 한다.

최저제세의 근거마련

증권거래세법 제8조(세율)에 의하면 현재 비상장·미등록 주식을 교환할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(0.5%)는 사실상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.

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금없이 이루어지는 기업간 신주교환방식인 주식스왑의 허용은 물론,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벤처기업간의 M&A시 보다 적은 세율의 적용이 필요하다.

주식교환(주식스왑)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

소득세법 제94조(양도소득의 범위)에 의하면 주식교환에 의한 M&A의 경우 현행 세법상 주식의 매각으로 간주되어 미실현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.

주식교환에 의한 과세는 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임으로 주식교환시 교환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. **KoVA**



Deloitte & Touche

딜로이트투쉬 기업금융(Deloitte & Touche Corporate Finance)은 기업 금융 관련 자문서비스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기업금융 전문회사로서 7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. 기업금융서비스 (M&A, 외자유치, 민영화, IPO등)와 기업 구조조정서비스, 부동산서비스 및 거래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기업전반의 전략적인 재무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.